

의안번호	제434호
의결 연월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자	박병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3년 10월 4일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병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4
----------	-----

발의연월일 : 2023년 10월 4일

발 의 자 : 박병천·김현문·이정범
박용규·박재주·유상용
이윅희 의원

1. 제안 이유

도내 다문화가족 학생들의 교육 수요 증가와 통합성장을 고려한 문화 다양성 이해 등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 학교 지원 등으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다문화가족' 용어 정의 정비 (안 제2조제1항)

나.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에 '인력 확보' 사항 추가
(안 제3조제2항)

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수행 사업에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사항 신설(안 제 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라. 띄어쓰기 수정, 불필요한 단어 삭제 등 조문 정비
(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붙임

나. 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첨부

다. 관계부서 협의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유초등교육과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3. 그 밖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3조제1항 중 “해마다 연초에 필요한”을 “매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다문화교육 시책”을 “다문화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재원 확보”를 “재원 및 인력 확보”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교육 지원”을 “교육지원”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를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을 “사람 중에서”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연1회”를 “연 1회”로, “1이상”을 “1 이상”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5.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제14조 중 “진흥”을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으로 한다.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5조 및 제16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 대학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① (생 략)</p> <p>2. 「<u>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u>」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p> <p>3. 「<u>충청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u>」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p> <p>② (생 략)</p> <p>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u>해마다</u> 연초에 <u>필요한</u>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u>다문화교육 시책의 기본 방향</u></p> <p>2. (생 략)</p> <p>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u>재원확보</u>에 관한 사항</p> <p>4. ~ 6. (생 략)</p> <p>제4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p>	<p>제2조(정의) ① (현행과 같음)</p> <p>2. 「<u>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u>」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p> <p>3. 그 밖에 <u>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u></p> <p>② (현행과 같음)</p> <p>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 ----- ----- ----- -- <u>매년</u> ----- -----.</p> <p>② ----- -----.</p> <p>1. <u>다문화교육</u>----- --</p> <p>2. (현행과 같음)</p> <p>3. ----- <u>재원 및 인력확보</u>--</p> <p>4. ~ 6. (현행과 같음)</p> <p>제4조(위원회 설치) ① -----</p>

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 6. (생략)

④ ~ ⑥ (생략)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3. (생략)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생략)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생략)

----- 교육지원 -----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사람 중에서 -----

1. ~ 6.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5조(위원회의 기능) -----
다음 -----

1. ~ 3. (현행과 같음)

제7조(회의) ① ----- 연 1회 -----

-- 1 이상-----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 3. (생략)

<신설>

<신설>

4.·5. (생략)

③ (생략)

제14조(예산)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신설>

제15조 (생략)

② -----
-----.

1. ~ 3. (현행과 같음)

4.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5.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6.·7.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예산) -----
--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

제15조(실태조사) ①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역 대학 등 관계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현행 제15조와 같음)

관계 법령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6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개정 2019. 12. 3.>

1. 초등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전문개정 2012. 3. 21.]

□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약칭: 외국인처우법)

[시행 2023. 7. 19.] [대통령령 제19355호, 2023. 4. 18.,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2.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
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 개요

- 다문화가족 학생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밀집학교 지원

2. 비용 발생 요인

- 매년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및 인건비 발생

3. 관련 조문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안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4.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
- 5.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4. 비용추계 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물가상승률은 고려하지 않음.
- 산출내역의 단가는 충청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 지침 및 운영비·자산취득비의 기준단가로 하며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및 다문화학생 밀집학교 지원을 위한 강사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추계함.

※ 향후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운영 수는 증감될 수 있음

나. 추계 결과

-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2024년 800,000천원이 소요되고, 향후 5년간 4,100,000천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됨.

〈 연도별 비용 추가 소요 예산 〉

(단위 : 천원)

사업명	합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 운영	600,000	100,000	100,000	100,000	150,000	150,000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	3,5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700,000

다. 추계비용의 상세 내역

-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의 수행사업 (안 제10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 1)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 운영 (문화다양성 이해교육, 문화 교류프로그램, 다문화교육 전시체험관 등)
 - 소요예산(안): 100,000천원 ('27년 이후 150,000천원)

- 인 건 비 60,000천원 ※ 30,000원×20명×100시간
- 운 영 비 40,000천원 (교재, 차량임차료, 학습용품, 급량비 등)
- 추가예산 50,000천원 (2027년 이후 부모국 이해교육 추가 프로그램 운영 비용)

2) **다문화가족학생 밀집학교*** 지원(한국어위탁교육, 다문화 맞춤형 강사 지원, 정서 및 진로 프로그램 운영 등)

* **밀집학교(교육부기준)**: 재학생 100명 이상 전체 학생대비 다문화학생 비율이 30% 이상인 학교 [충북 2교]

⇒ 동 조례 취지 등을 고려하여 다문화학생 50명 이상 학교**를 포함하여, 다문화 학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학교 등을 지원

** **대상학교(다문화학생 수): 15교(1,219명)** ※ 2022. 4월 1일 기준

－ 소요예산(안): 700,000천원

- 인건비 600,000천원 ※ 30,000원×20명×50시간×20회
- 운영비 100,000천원(교재, 차량임차료, 학습용품, 급량비 등)